

[일련번호 : 9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동은 「주민등록법」 및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3조(습득 주민등록증의 처리)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의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,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, 무단전출, 직원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,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파기하여야 하고, 제44조(주민등록증의 회수·파기 등)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[별지 제36호 서식]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「주민등록 사무편람」 (행정안전부)에 의하면 시·군·구로부터 이송되어온 습득 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분실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분실 재발급을 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회수(인계)대장에 등재하여 파기하

도록 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◎◎동은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자치행정과 또는 타 시군구로부터 송부받은 습득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작성하지 않았으며, 재발급 여부 확인 후 유효한 증은 습득주민등록증수령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하나 통지도 실시하지 않았다 (2024년 전 기간 총 10건).

또한 2023년에도 이송된 습득주민등록증 총 15건 중 6건은 교부처리하였으나 9건은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작성하지 않았고,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경우 회수하여야 함에도 회수처리하지 않았다.

2022년에는 관외 또는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이송된 습득 주민등록증 총 3건에 대하여 처리대장 작성을 누락, 회수처리를 실시하지 않았다.

[표]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부적정 내역

연번	송부일자	성명	생년월일	구분	처리대장 작성 및 통지여부
1	241206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통지 미실시
2	241202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통지 미실시
3	241007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통지 미실시
4	240912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통지 미실시
5	240722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통지 미실시
6	240605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통지 미실시
7	240422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통지 미실시
8	240928			관외	처리대장 미작성 및 통지 미실시
9	240910			관외	처리대장 미작성 및 통지 미실시
10	240502			관외	처리대장 미작성 및 통지 미실시
11	231006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12	230921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13	230626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14	230531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15	230421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16	230213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17	230112			관내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18	231025			관외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19	231020			관외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20	2022			관외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
연번	송부일자	성명	생년월일	구분	처리대장 작성 및 통지여부
21	2022			관외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22	2022			관내(동)	처리대장 미작성 및 회수 미실시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